

이 보도자료는 2024. 7. 21.(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7. 21.(일)

자료문의 : 공판1과
전화번호 : 02-3480-2360
주책임자 : 공판1과장

제 목

2024년 6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6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① 마약류 매도인 A의 부탁을 받고 'A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위증한 B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 등을 분석하여 B가 마약 대금을 A로부터 환불받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B를 위증으로 구속하고, A의 위증교사까지 밝혀내 A도 구속한 사례 [서울중앙지검]

②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 D가 공범 C의 재판에서 'C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여 결국 C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공범 진술 대조,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D로부터 위증을 자백받고, 교도소 접견 및 영치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수감 중이던 D가 C의 동거녀 E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은 사실도 밝혀 E를 위증교사로, D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부산지검]

③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와 경리직원 G는 회사 명의상 대표자인 H를 사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고, 결국 F가 기소되자 G는 '회사의 실운영자는 H'라고 위증한 사건에서, 면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H로부터 본건 범행의 전모를 자백받아 F, G를 범인도피교사, G를 위증, H를 범인도피로 인지·기소한 사례 [통영지청]

④ 무속인 부부 I, J가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 부인하자, 수사 당시부터 I, J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을 근거로 법원에 I, J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고 변론분리를 요청하여 증인신문한 결과, '퇴마 행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힌 후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한 사건에서, 면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J로부터 자백을 받고 각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울산지검]

⑤ K가 주범 L과 함께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나 K만 기소된 사건에서, 부정수급한 자금의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은폐된 주범 L의 존재를 밝혀내고, L이 K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교사한 사실도 밝혀내어 주범 L을 고용보험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K를 범인도피로 인지·기소한 사례 [인천지검]

⑥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 약 4.5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 보호 법리검토, 의견제출 등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전세사기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낸 사례 [광주지검]

[첨부: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p>【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의 부탁을 받은 매수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구속 기소한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매도인 A의 재판에서 매수인 B가 A의 부탁을 받고 'A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증언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에게 마약을 샀다'는 핵심 증거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되어 A의 마약 매매 사건의 공소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1심 재판 종결 전에 신속히 위증 수사에 착수하여, ○ B가 경찰 조사 시 '마약 상태가 좋지 않아 카카오페이로 환불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에 착안, B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하여 B가 마약 대금 일부를 A로부터 환불받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B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혀 B를 구속하고, ○ B의 자백을 통해 A의 위증교사를 확인하여 A도 구속한 후 일괄 기소한 사례
	박은혜(35기)		
	이동우(44기)		
2	부산지검 공판부		<p>【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한 동거남을 위해 공범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C와 함께 수거한 D가 공범 C의 재판에서 'C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하고, C의 동거녀 E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D의 번복 증언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 공범 진술 대조, SNS 내역 검토, 영상녹화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D로부터 위증 범행을 자백받고, ○ 교도소 접견 및 영치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C의 동거녀 E가 수감 중인 D를 접견, 회유하여 위증교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 E를 위증교사로, D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자칫 암장될 수도 있었던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발하여 엄단한 사례 <p>※ 2개월간 위증사범 5명 인지·기소</p>
	정명원(35기)		
	김병채(46기)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통영지청 형사1부	<p>【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실운영자와 경리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한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실운영자 F와 경리 G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회사의 명의상 대표 H로 하여금 실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F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가 ‘회사의 실운영자는 H라고 허위증언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H가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회사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확인하고, ○ H를 재조사하여 F, G의 범인도피교사 등 본건의 전모 일체를 자백받고, 이를 토대로 G가 ‘회사의 실운영자는 H’라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 F, G를 범인도피교사, G를 위증, H를 범인도피로 각 인지·기소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p>※ 5개월간 위증사범 등 12명 인지·기소</p>
	임연진(36기)	
	장우진(변7)	
4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p>【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공동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상호 위증한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속인 부부 I, J가 ‘퇴마 행위를 위해서 교복을 입고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I와 J가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게 한 후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증언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수사 당시부터 I와 J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을 근거로 상호 증인신문이 필요함을 적극 피력하는 등 변론분리를 요청하여 증인신문한 결과,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 원 사건 증거기록에 대한 면밀히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 I와 J를 직접 조사하여 그 중 J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 각 위증으로 인지·기소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p>※ 2개월간 위증사범 11명, 범죄수익은닉사범 2명 인지·기소</p>
	이대성(37기)	
	박엘림(변12)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인천지검 공판승무1부	<p>【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힌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가 주범 L과 함께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나 K만 기소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재판 중 범인 명의상 대표 M의 증인 신문 내용, 부정수급한 금원의 흐름에 대한 면밀히 분석 등을 통해 주범 L의 존재를 밝혀내고, K에 대한 영상녹화 등을 통해 L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 L이 M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M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M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어, ○ 구치소 출장조사를 통해 L의 자백을 받고 L을 고용보험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K를 범인도피로 인지·기소하는 등 은폐된 주범을 밝히고 실제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p>※ 1개월간 사법질서 방해사범 3명 인지·기소</p>
	노정옥(35기)	
	손영조(변12)	
6	광주지검 공판부	<p>【공소유지 우수사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를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p> <p>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7,800만 원에 매수하며 임대차 종료 시 8,450만 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계 약 4.5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음에도,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직접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주택 매매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공판 활동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내어, ○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부동산 거래를 하여 피해를 양산한 전세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 <p>※ 2024. 7. 8. 보도자료 배포</p>
	윤나라(36기)	
	최정훈(44기)	